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6045 |
|----------|-------|

발의연월일 : 2018. 10. 23.

발 의 자 : 박용진 · 강병원 · 강창일
강훈식 · 고용진 · 권미혁
권칠승 · 금태섭 · 기동민
김경협 · 김두관 · 김민기
김병관 · 김병기 · 김병욱
김부겸 · 김상희 · 김성수
김성환 · 김영주 · 김영진
김영춘 · 김영호 · 김정우
김정호 · 김종민 · 김진표
김철민 · 김태년 · 김한정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남인순 · 노웅래 · 도종환
맹성규 · 민병두 · 민홍철
박경미 · 박광온 · 박범계
박병석 · 박영선 · 박완주
박재호 · 박 정 · 박주민
박찬대 · 박홍근 · 백재현
백혜련 · 변재일 · 서삼석
서영교 · 서형수 · 설 훈
소병훈 · 손혜원 · 송갑석
송기헌 · 송영길 · 송옥주
신경민 · 신동근 · 신창현

심기준 · 심재권 · 안규백
안민석 · 안호영 · 어기구
오영훈 · 오제세 · 우상호
우원식 · 원혜영 · 위성곤
유동수 · 유승희 · 유은혜
윤관석 · 윤일규 · 윤준호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이규희 · 이상민 · 이상헌
이석현 · 이수혁 · 이용득
이원욱 · 이인영 · 이재정
이종걸 · 이철희 · 이춘석
이학영 · 이해찬 · 이후삼
이 훈 · 인재근 · 임종성
전재수 · 전해철 · 전현희
전혜숙 · 정성호 · 정세균
정재호 · 정춘숙 · 제윤경
조승래 · 조용천 · 조정식
진선미 · 진 영 · 최운열
최인호 · 최재성 · 추미애
표창원 · 한정애 · 홍영표
홍의락 · 홍익표 · 황 희
의원(129인)

제안이유

현행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는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 부모분담금
으로 수입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지출항목 구분이 미흡하

여 투명한 수입·지출 확인이 어려운 구조임. 이러한 불투명한 회계 구조는 사립유치원의 회계시스템 부재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됨. 실제 사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초·중·고교나 국·공립유치원은 투명한 수입·지출의 확인을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공개되면서 투명한 회계를 위한 법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또한,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지원금 판례가 있어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바뀌야 한다는 것과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데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유치원 폐쇄 명령을 받고도 유치원 명을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유치원 알리미’라는 정보공시 홈페이지가 있지만 이를 통해 사실상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향후에는 제대로 된 공시제도가 필요하다는 것 등 유치원 관련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유치원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유치원설립

의 결격사유를 명시함(안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8조의2 신설).

나.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의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유치원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9조의2제1항 및 제5항 신설).

다. 정보시스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세분화하여 입력하고 관할 교육청 등에 보고하도록 함(제19조의8제5항).

라. 유아가 유치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유치원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단서 신설).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이 보조금·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보조금·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바. 관할청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재정지원 배제를 추가함(안 제30조제2항).

사.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유치원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조치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치원 설립·경영자인 경우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

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2조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명령을 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 제3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9조의2제1항 중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교육행정기관의 업무(회계관리를 포함한다)”로, “구축·운영할 수 있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유치원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제1항 단서 중 “유치원과 대통령령으로”를 “유치원과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유치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의7제1항 중 “국립·공립 유치원에”를 “유치원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립유치원의”를 “공립·사립유치원의”로 한다.

제19조의8제2항 중 “원장은 회계연도마다”를 “원장은 정보시스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세분화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마다”로, “유치원운영위원회에”를 “관할 교육청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립유치원의”를 “공립·사립 유치원의”로 한다.

제2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아가 유치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유치원에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제28조의 제목 “(보조금의 반환)”을 “(보조금 등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립유치원의 장이”를 “유치원의 장이”로, “보조금의”를 “보조금·지원금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보조금을”을 각각 “보조금·지원금을”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을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평가 및 조치 등의 공개) ① 관할청은 제1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와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유치원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치원의 정보 공개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명령을”을 “명령이나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을”
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② (생 략)</p> <p>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 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 립을 인가하여야 한다.</p> <p>1. 2. (생 략)</p> <p><u><신 설></u></p> <p>3. (생 략)</p> <p>④ (생 략)</p> <p><u><신 설></u></p> | <p>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제28조제1항 및 제30조에 따 른 조치를 받고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유치원 설립·경 영자인 경우</u></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u>제8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u></p> <p>1. <u>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p> <p>2. 「<u>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u>」 제3조제1호의 <u>정신질 환자</u></p>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2조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명령을 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신 설>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

8. 제3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

-----교육행정기관의 업무(회계관리를 포함한다)-----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유치원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

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절차를 통하여 원장을 선발하는 유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 ④ (생략)

<신설>

제19조의7(유치원회계의 설치) ① 국립·공립 유치원에 유치원회계를 설치한다.

② ~ ⑤ (생략)

⑥ 유치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8(유치원회계의 운영) ① (생략)

②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

----- . -----

-----유치원과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유치원 및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
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의7(유치원회계의 설치) ① 유치원에-----
-- .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공립·사립유
치원의-----
----- .

제19조의8(유치원회계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장은 정보시스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세입세출 항

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⑥ 유치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무상교육)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③ ~ ⑤ (생략)

제28조(보조금의 반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

목에 따라 세분화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관할 교육청 및 유치원운영위원회에-----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공립·사립유치원의-----

제24조(무상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다

만, 유아가 유치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유치원에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보조금 등의 반환) ① -----유치원의

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유치원 목적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4. (생략)
- ② ③ (생략)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생략)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장이-----

-----보조금·지원금의-----

1. -----보조금·지원금을-----

2. -----보조금·지원금을-----

3. 4.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

제30조의2(평가 및 조치 등의 공개)

① 관할청은 제1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와 제28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① 관
 할청은 유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
 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을 위반한 경우

2. 3. (생략)

②·③ (생략)

조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조
 치를 한 경우 해당 유치원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치원의 정
 보 공개 범위와 방법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① ---

 ---.

1. -----

 -----명령이
나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을---

2.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